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11.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2019년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의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을 반영하여 장기임대료를 현실화하고자 함.
- 나.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조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임대농업기계의 입고시간 조정(안 제8조)
- 현행의 사용 당일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조정한다.
- 나.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정 (안 제18조)
- 종전의 임대료 및 배달료의 부과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안 제19조)
- 성별을 고려한 위촉 규정 및 여성농업인·단체 일정 비율 이상 위촉을 의무화
- 라. 농업기계의 장기임대시 임대료 규정 (별표)

3. 조 례 안 : 불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불임)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입고시간: 사용일 당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 사용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입고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제19조제1항 중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를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나,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 2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0조제1항 관련)

농업기계 임대료 및 배달료 징수기준

○ 농업기계 임대료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300만원 미만	10,000원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0,000원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30,000원
7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40,000원
900만원 이상 ~ 1,100만원 미만	50,000원
1,1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60,000원
1,3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70,000원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80,000원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90,000원
3,000만원 이상 ~	100,000원

○ 농업기계 장기임대료 : 농업기계 구입가격의 20%로 하고 내용연수 기간동안 분할 납부한다.

※ 내용연수 이후는 기계상태에 따라 불용처리 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농업기계 배달료

구 분	배 달 료	산출기준	비 고
농업기계	20,000원	1회 편도요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농업기계 임대·배달기준) ①·② (생략) ③ 농업기계 출고 및 입고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다만, 농업기계 사용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입고하여야 한다.</u> 1. (생략) 2. 입고시간: <u>사용일 당일 오후 5시까지</u> <u><신설></u> ④ (생략) 제18조(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제8조(농업기계 임대·배달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단서 삭제></u> 1. (현행과 같음) 2. 입고시간: <u>사용일 당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 사용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입고하여야 한다.</u> 3. <u>제1호 및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u>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

여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둘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배달 및 배달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3. (생략)

4. (생략)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
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
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③ (생략)

-----.

<삭제>

2.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1. (현행 제3호와 같음)

3.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

-----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
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 . 다만, 해당 분야 특
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
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
를 인정하나, 여성농업인 및 여
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
2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① (생략)

② 법 제8조의2 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 <신설 2016. 2. 11.>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임대농업기계의 입고시간 조정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
(안 제8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구미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하여 입고시간을 1시간 연장할
경우 추가 인건비로 인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4,747천원 정도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산출내역	금액
농기계 수리원 시간외수당	$15,960\text{원} \times 1.5 \times 4\text{명}$ $\times 22\text{일} \times 7\text{개월}$	14,747

※ 수리원 시간외수당 산출근거 : 통상일급 127,680/8시간=15,960원

4. 작성자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담당 김용화

소관 실 · 과		농촌지원과
입 안 자	과 장	장 상 용
	담 당	김 용 화 (480-4290)